

<p>제2026-10호 2026년 2월 5일(목)</p>	<p>시  보</p> <p>여수시</p>	<p>시정지표</p> <p>소통화합 열린도시 인재육성 산업도시 문화예술 복지도시 해양관광 휴양도시 기후변화 선도도시</p>
-------------------------------------	---	--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홍보담당관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3 FAX) 659-5803

고 시

- 여수시 고시 제2026-39호 여수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

공 고

- 여수시 공고 제2026-407호 전문건설업 폐업 공고 - 세중건설(주)
- 여수시 공고 제2026-437호 2026년 어선어업 노동력 절감장비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 여수시 공고 제2026-440호 2026년 소형어선 화재징후감지시스템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읍·면·동

- 여수시 돌산읍 공고 제2026-6호 2026년 계동 유원지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회 람								
--------	--	--	--	--	--	--	--	--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여수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

여수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 신청 건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21조, 「전라남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에 따라 여수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합니다.

2026. 2. 5.

여 수 시 장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공장용지 조성사업(공유수면)
2. 사업시행자 성명 주소(변경없음)
 - 가. 성 명: 재원산업(주) 대표 심재원
 - 나. 주 소: 전라남도 여수시 낙포단지길 79(낙포동)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 가. 사업의 목적: 전자공업용 화학제품 제조업 및 석유화학제품 저장물류업 공장용지 확보
 - 나. 사업의 개요: 179,088㎡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가. 위 치: 여수시 낙포동 355-23번지 공유수면 일원
 - 나. 면 적: 179,088㎡
5. 사업시행기간(변경): **ㄱ 지정 : 2022. 1.13. ~ 2026.12.31.**
ㄴ 변경 : 2022. 1.13. ~ 2030.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변경없음): 붙임
7.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은 관리청인 여수시로 무상귀속 됨
8. 관계도서는 여수시청 도시계획과(☎061-659-4013)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변경없음)

연번	위 치	지번	지목	지 적(㎡)	신청면적(㎡)	소 유 자		비 고
						주 소	성명	
1	낙포동	355-23	제	34,323	1,294		국토교통부	
2	낙포동	355-43	제	12	12		국토교통부	
3	낙포동	355-63	제	47	47		국토교통부	
4	낙포동	355-44	제	1,559	51		국토교통부	
5	낙포동	공유수면			177,684		공유수면	

전문건설업 폐업 공고

전문건설업 폐업신고에 따라 신고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건설업의 폐업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건설업등록말소의 공고)에 따라 폐업 처리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3일

여수시장

1. 폐업대상 업체

상 호	영업 소재지	폐업대상 건설 업종 (등록번호)	법인번호 (주민번호)	폐업일자	폐업사유
세중건설(주) (전○기)	전남 여수시 신기북4길3,2층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여수2014-09-02)	206211-0051305	2026.2.3.	사업포기

2. 공고 기간: 2026. 2. 3. ~ 2026. 2. 10.(14일)

3. 공고 장소: 여수시 홈페이지 및 시보

4. 기타

본 신고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의3(건설업 등록말소의 공고)에 따라 건설산업정보시스템(<http://www.kiscon.net>)에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어선어업 노동력 절감장비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2026년 어선어업 노동력 절감장비 지원사업 신청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지원받고자 하는 어업인은 2026년 2월 19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2. 4.

여수시장

1. 사업목적 : 어촌의 고령화 및 인구감소에 따른 만성적 어업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어선 장비를 지원하여 어업 효율성 등 근로여건 개선 및 안정적 조업 기반 조성

2. 사업내용

- 사 업 비 : 90,000천원(도비 18%, 시비 42%, 자담 40%)
 - * 제1회 추경에 예산 미반영시 제2회 추경에 반영 예정
- 사업대상 : 10톤 미만의 연안어업 허가 어선(관리선 포함)
 - * 허가어업어선 우선 → 양식장·어장관리선 순(예산이 남는 경우)
- 지원내용 : 연안어선에 대한 그물 인양기(양망가양승가연승기), 조타기 구매 및 설치 비용의 60% 지원
- 지원기준 : 1인당 5백만원 이내(자부담 포함)
 - * 장비 실 구매가액이 지원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부담 추가 가능
 - * 1척당 1개 항목만 지원
 - * 사업(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사업) 간 중복 품목 지원 불가

○ 제외대상

- 최근 3년 이내(직전 연도말 기준)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자(경고 및 특별사면 제외)
 -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어선 또는 「어선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운항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해당 어선을 계류한 어선
 - 당해연도 사업자 선정 시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납부하지 않은 자
 -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에 따른 감척대상 어선
 - 가족(부부 등)이 어선의 소유를 변경하여 교차적으로 지원하는 자
 - 최근 2년 이내에 동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 사업포기 등으로 사업선정 취소 이후 취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단 해양사고 등 특별한 사정으로 사업을 포기한자는 제외

○ 지원품목

- 수협중앙회 어업용 기자재 구매단가 체결이 된 그물 인양기(양망기·양승기·연승기), 조타기

3. 신청기간 : 2026. 2. 5. ~ 2026. 2. 19.(14일간)

4.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접수처 : 여수시 수산경영과 어업지도팀(여수시 신월로 648, 국동임시별관), 읍·면·동 사무소 ※가까운 곳에 신청 가능

※ 신청 시 본인이 희망하는 장비의 모델명을 반드시 기재해야 함

5. 구비서류

가. 사업 신청서 1부

나. 어업허가증 또는 관리선지정증 등 기타 어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어선검사증서 1부

라. 선적증서(선박국적증서) 1부

6. 사업 추진절차

① 사업신청 → ② 우선순위 선정→ ③ 사업자 선정 통보 → ④ 자부담
입금 → ⑤ 장비·설비 교체, 설치 등 → ⑥ 준공 및 사업정산

7. 유의사항

지원받은 장비는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일로부터 5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이 금지

8. 문의처 : 여수시 수산경영과 어업지도팀(☎659-3918)

※ 공고문과 사업지침이 배치되는 경우 사업지침이 우선함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어업인 지원을 위한 해양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해양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어업인 지원을 위한 해양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해양수산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해양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해양수산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해양수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해양수산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어선어업 노동력 절감장비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전라남도 친환경수산물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친환경수산물과	과장 전창우	061-286-6910
		팀장 김준열	061-286-6930
		담당자 정길진	061-286-6934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전라남도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등 관계법규에 따라 시행하며, 본 지침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관계법규를 우선 적용

I. 사업개요

1. 목적

- 어촌의 고령화 및 인구감소에 따른 만성적 어업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어선 장비를 지원하여 어업 효율성 등 근로여건 개선 및 안정적 조업 기반 조성

2. 근거법령

- 「수산업법」 제93조(보조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보조 대상사업)

3. 지원계획

- 사업량 : 133척(예정)
- 사업비 : 667백만원(도비 120, 시군비 280, 자담 267)

II. 202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원대상 : 10톤 미만의 연안어업 허가 어선 (관리선 포함)

2. 사업자격 및 선정 제외대상

- 사업자격 : 어선의 장비(양망기 등) 교체 또는 설치를 희망하는 자

○ 선정 제외대상

- 최근 3년 이내(직전 연도말 기준)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경고 및 특별사면 제외)
-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어선 또는 「어선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운항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해당 어선을 계류한 어선
- 당해연도 사업자 선정 시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납부하지 않은 자
-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에 따른 감척대상 어선
- 가족(부부 등)이 어선의 소유를 변경하여 교차적으로 지원하는 자
- 최근 2년 이내에 동 사업의 지원을 받은 어선
- 사업포기 등으로 사업선정 취소 이후 취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단, 해양사고 등 특별한 사정으로 사업을 포기한자는 제외)

3. 지원형태 및 기준

○ 사업집행주체 : 시장·군수

○ 지원형태 : 자치단체자본보조

○ 지원조건 : 도비 18%, 시·군비 42%, 자담 40%

○ 지원기준 : **1인당 5백만원 이내(자부담 포함)**

- 지원기준액 내에서 실 구매가액(설치비 포함)을 보조지원율로 지원

* 장비 실 구매가액이 지원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부담 추가 가능

○ 지원품목 : **그물인양기(양망기·양승기·연승기), 조타기**

※ 1척당 1개 항목만 지원

※ 사업(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사업, 친환경에너지절감장비 보급사업)간 중복 품목 지원 불가

○ 유의사항

- 사업자 선정 후 지원품목 변경은 도 승인 후 가능

- 보조금으로 취득·설치한 장비·설비는 내용연수(사후관리기간)까지 관리

4. 중요재산 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해야 함

분류	내용연수(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시설관리책임
장비	설치일(물품납품일)로부터 5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지자체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 사업 추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도	사업시행지침 수립 및 시달 예산배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추진사항 점검 및 확인
↓ ↑	
시·군	사업집행 세부 추진계획 수립 사업자 모집 공고(지자체) 사업신청 및 사업자선정(어업인/지자체) 사후관리 등

1. 사업계획 수립 단계

도

- 사업추진방향 등 사업시행지침 수립

2. 사업수요조사 및 사업신청 단계

도

- 사업추진방향 등 사업시행지침 시·군 및 수협중앙회(단위수협)에 시달
- 사업 수요조사 실시 후 결과 반영하여 지자체별 예산 배정
 - * (지자체별 예산 배정 기준) 지자체별 수요조사 결과를 우선 반영하되 당해연도 수요신청규모가 예산을 상회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 당해연도 예산 실적행률이 낮을 경우 이를 차년도 예산 배정 시 반영할 수 있음

시·군

- 시·군 자체 세부사업추진계획 수립
- 사업자 모집공고 및 어촌계 등 방문 사업 홍보·지도
 - 모집공고 기간을 설정(14일 권고)하되, 사업별 희망자가 없거나 추가수요가 발생할 때에는 지자체별 별도 계획에 따라 추가 모집 가능

어업인

- 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사업신청서를 작성(붙임 제1호서식)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시·군 담당 부서에 신청

3. 사업자선정

도

-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적격 사업자 선정 지도

시·군

- 사업신청서의 내용과 타당성 여부 등을 사전검토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지자체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최종 선정 명단을 전담도로 제출**(사업포기에 대비하여 예비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음)
 - 선정된 사업자의 승인내역(지원품목모델명, 지원가격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도에 승인 후 사업집행
-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는 다음의 순위로 하되, 동일 순위자 상호간의 세부 우선순위는 **톤수가 작은 어업인 순**으로 함
 - 허가어업어선 우선 → 양식장·어장관리선 순(예산이 남는 경우)
 - ① 동일사업 지원내역이 없는 어업인
 - ② 사용연수가 오래된 장비를 교체하고자 하는 자
 - ③ 새로운 장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
 - ※ 시군 자체 실정에 따라 우선순위 조정·추가 가능
- 사업자 선정 결과(사업자명단, 지원금액)를 수협에 통보하고 사업추진에 필요사항 등 안내
- 지자체는 사업자로 하여금 수협중앙회 공동구매 단가계약 체결된 장비를 해당 수협 조합장에게 신청하여 사업대상 어선에 설치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사업자에게 사업 전반에 대하여 교육하여야 함
- 수협중앙회 어업용 기자재 구매단가 체결 제품 구입을 원칙으로 하되, 시군에서 별도 구매계약 체결 가능

수협중앙회

- 사업자별 장비조달업무 등(수·발주, 검수, 대금정산, 세무, 제품 사후관리 등) 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사업자에게 사업 전반에 대하여 교육하여야 함

4. 자금배정 단계

도

- 시군 자금배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송금 : 2026. 2월 중

시·군

- 보조금 교부신청 : 2026. 2월 초
- 보조금 지급은 어업인이 사업자로 선정되어 설치하고자 하는 장비가 어선에 설치 완료된 때, 준공계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5. 이행점검 단계

<사후관리>

도

- 시·군의 사업추진상황 등에 대한 집행점검 실시(분기별 1회 이상)
 - 점검항목 : 사업추진 실적, 보조금 집행현황, 현장 애로사항 등
- 사업추진 실적 보고는 의회 등 필요에 따라 월별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시·군

- 사업 추진상황, 사업추진 적정여부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및 부실화 사전 방지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집행주체의 책임 하에 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50만원이하는 관리를 아니할 수 있음

<제재>

도

- 지침위반사례 적발, 언론 등 사회적 문제 야기, 사업실태점검 비협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지자체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보조금 교부결정시 지연기간 등에 따라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음

사업관리주체(시·군)

- 보조금이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업자를 지도·감독
- 보조금이 교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하게 사용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향후 3년간 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6. 행정사항

-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추진 실적 등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구분	제출기한	제출서식
사업추진상황 보고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서식 2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사업종료, 회계연도종료 2개월 이내	서식 3,4

2026년 소형어선 화재징후감지시스템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2026년 소형어선 화재징후감지시스템 지원사업 신청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지원받고자 하는 어업인은 2026년 2월 19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2. 4.

여수시장

1. 사업목적 : 소형어선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화재징후감지시스템 설치 지원을 통해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

2. 사업내용

- 사업비 : 27,500천원(도비 30%, 시비 30%, 자담 40%)
 - * 제1회 추경에 예산 미반영시 제2회 추경에 반영 예정
- 사업대상 :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른 연근해어업(근해·연안·구획) 허가를 받은 어선
- 지원내용 : 연근해(근해·연안·구획)어선에 대한 화재징후감지시스템 구매 및 설치 비용 60% 지원
- 지원기준 : 1인당 5백만원 이내(자부담 포함)
 - * 1척당 1대 지원
 - * 장비 실 구매가액이 지원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부담 추가 가능
 - * 지원 기기의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은 지원제외

○ 제외대상

- 최근 3년 이내(직전 연도말 기준)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자
-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어선 또는 「어선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운항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해당 어선을 계류한 어선
- 그 밖의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감척대상 어선, 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해당 어선을 변경하는 경우 등)

○ 지원품목

- 고정형(화재징후감지 시스템) : CCTV+열화상카메라
- 회전형(재난안전모니터링 시스템) : CCTV
- * 태양광패널, 배터리, 컨트롤러, 폴대 및 함체 등 포함

3. 신청기간 : 2026. 2. 5. ~ 2026. 2. 19.(14일간)

4.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접수처 : 여수시 수산경영과 어업지도팀(여수시 신월로 648, 국동임시별관), 읍·면·동 사무소 ※가까운 곳에 신청 가능

※ 신청 시 본인이 희망하는 장비의 모델명을 반드시 기재해야 함

5. 구비서류

- 가. 사업 신청서 1부
- 나. 어업허가증 1부
- 라. 신분증 및 통장사본 1부

6. 사업 추진절차

- ① 사업신청 → ② 우선순위 선정 → ③ 사업자 선정 통보 → ④ 장비 설치 → ⑤ 준공 서류 확인 및 보조금 지급 → ⑥ 사업정산

7. 유의사항

지원받은 장비는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일로부터 5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이 금지

8. 문의처 : 여수시 수산경영과 어업지도팀(☎659-3918)

※ 공고문과 사업지침이 배치되는 경우 사업지침이 우선함

소형어선 화재징후감지시스템 지원 사업 신청서

신청자	단체 등의 명칭					
	성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종사경력	년				
신청내용	신청 품목	고정형 / 회전형				
	어선명	신청사업과 관련된 허가 및 면허				
	어선번호	종 류			허가·면허 번호 (허가기관)	
	톤수					
	사업비 (천원)	계	도 비 (%)	시군비 (%)	자부담 (%)	
금융기관 계좌번호						
첨부서류 1. 어업허가증 2. 신분증 및 통장사본						
<p>○ 상기 본인은 소형어선 화재징후감지시스템 지원 사업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면서 본 사업의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p> <p>○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입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도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권리 안내문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신청하였습니다. <p style="text-align: right;">2026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자 (서명 또는 인)</p> <p>○ ○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귀하</p>						

소형어선 화재징후감지시스템 지원사업

소형어선 화재징후감지시스템 지원사업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전라남도 친환경수산물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친환경수산물과	과장 전창우 사무관 김상국 주무관 이도현	061-286-6910 061-286-6950 061-286-6953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전라남도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등 관계법규에 따라 시행하며, 본 지침과 상충하는 경우에는 관계법규를 우선 적용

I. 사업개요

1. 목적

- 소형어선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화재징후감지시스템 설치 지원을 통해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

2. 근거법령

- 「수산업법」 제93조(보조 등),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보조대상사업) 제8호(어업 통신 및 안전조업지원 사업)
- 「어선안전조업법」 제26조(재정지원) 어선의 사고 및 예방을 위한 예산지원
- 「어선법」 제3조(어선의 안전관리)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6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22년	23년	24년	25년		
소형어선 화재징후감지시스템 지원사업	100대	-	-	-	10	'26년 1월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계	2026년	2027년	2028년 이후
합 계	1,733	400	1,333	
도 비	500	120	400	
시군비	500	120	400	
자부담	666	160	533	

II. 202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른 연근해어업(근해·연안·구획) 허가를 받은 어선

2. 신청자격 및 선정 제외대상

- 신청자격 및 요건
 - 화재징후감지시스템 설치를 희망하는 소형어선 소유자
- 지원 제외대상
 -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어선 또는 「어선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운항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해당 어선을 계류한 어선
 - 그 밖의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감척대상 어선, 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해당 어선을 변경하는 경우 등)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기준
 -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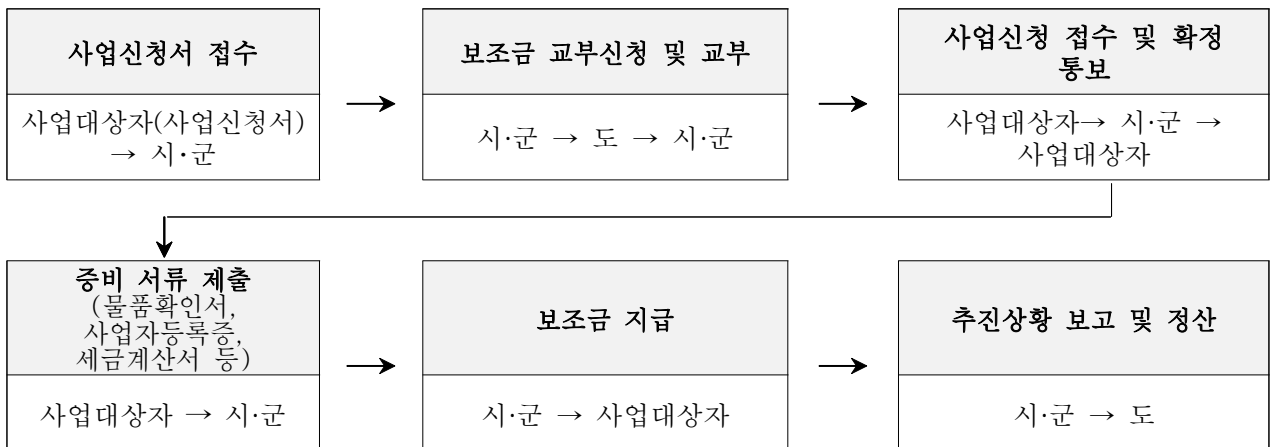
- 사업집행주체 : 시장·군수
- 지원대상 : 화재징후감지시스템 설치를 희망하는 소형어선 소유 어업인
-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 화재징후감지시스템 구매 및 설치 보조 지원
 - ※ 지원 기기의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은 지원제외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 지원형태 : 일반회계(자치단체자본보조)
- 지원조건 : 도비 30%, 시군비 30%, 자부담 40%
 - * 자부담금을 시군비 예산으로 대체 지원할 수 있음
- 지원 품목
 - 고정형(화재징후감지 시스템) : CCTV+열화상카메라
 - 회전형(재난안전모니터링 시스템) : CCTV
 - * 태양광패널, 배터리, 컨트롤러, 폴대 및 합체 등 포함
- 지원한도
 - 어선 1척당 1대 지원(대당 5백만원 한도)
 - * 지원한도 초과 금액은 어업인 부담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추진체계



2. 사업계획수립 단계

전라남도

- 사업시행지침 수립·시달
- 사업수요조사 시행 후 결과 반영하여 지자체별 예산 배정('26. 1.)
 - * 지자체별 수요조사 결과를 우선 반영하되 당해연도 수요신청 규모가 예산(도비)을 상회할 때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 당해연도 예산 실행률이 낮을 때 이를 다음 연도 예산 배정 시 반영할 수 있음

3. 사업신청 단계

전라남도

-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검토
 - 사업계획서 검토 후 전라남도 사업계획상 요구내용 등이 미반영된 경우 사업계획서의 수정을 요구하고 재검토

시·군

- 전라남도 사업시행지침을 근거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시행
 - * 사업계획서에는 세부단위별 사업내용 및 추진 일정, 예산집행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 사업자 공고·모집을 위해 홍보물 제작·배부 및 언론매체에 게재
 - * 시군 실정을 고려하여 모집공고 기간을 설정하되, 사업별 포기자 또는 희망자가 없을 때 지자체별로 별도 예비사업자 또는 추가 모집 가능
- 제출된 사업신청서 접수 및 신청자 관리

어업인

- 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사업신청서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시군으로 신청

4. 사업자선정 단계

전라남도

- 시군에서 최종 선정된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지원품목의 적정성, 지원 비율 등 검토 후 사업선정 결과 통보('26. 2. / 전라남도→ 시군)

시·군

-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면 사업자의 재무안정성, 자부담 능력 등 사업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예비사업자 포함)
 - 이 경우 필요하면 심의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지자체에서 운영·관리
 - * 사업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포기자 발생에 대비 예비사업자를 선정
 - * 사업시행 중 사업포기, 취소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변경 알림(시군→전라남도)
- 사업자선정 우선순위는 다음의 순위로 하되, 동일 순위자 상호간의 세부 우선순위는 운항실적이 많은 어업인 우선
 - 허가어업어선 우선 → 양식장·어장관리선 순(예산이 남는 경우)
 - * 시·군 자체 실정에 따라 선정 우선순위 조정·추가 가능
- 지자체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자 선정 공고 후 최종 사업자 선정 명단을 전라남도로 제출 : 2026년 2월까지

5. 자금배정 단계

전라남도

- 시군 자금배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송금 : 2026년 3월 초

시·군

- 시장·군수는 「지방보조금법」,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전라남도에 보조금 교부신청 등 절차를 이행

- 전라남도에 보조금 교부신청 : 2026년 3월중
- 보조금 지급은 업체에서 화재징후감지시스템을 설치한 후, 사업대상자가 증빙 서류를 해당 시군에 제출하면 보조금을 지급
- 물품납품 일정은 납품업체와 시군간 협의로 세부일정 조정

어업인

- 사업대상자는 업체에서 물품을 설치한 후 다음의 증빙서류를 해당 시군에 제출
 - 사업 완료 시 제출서류
 - 물품납품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세금계산서
 - 설치 완료 확인서(시스템 정상작동 여부 포함)
 - 설치 전후 사진대장

전라남도

- 시장·군수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을 때에는 사업목적 등 검토 후 「지방보조금법」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송금

6. 이행점검 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전라남도

- 「지방보조금법」 및 사업시행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 추진내용의 적정 및 부정수급 여부 등 사업 수행상황을 점검
 - 점검일정 : 연 1회 이상
 - 점검항목 : 사업 추진실적, 집행현황, 부정수급, 정산보고 절차 준수 여부 등 사업 수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등에 반영

시·군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에 대해 「지방보조금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 추진내용의 적정 및 부정수급 여부 등 사업 수행상황을 점검
 - 점검일정 :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후 전라남도예 보고

《제재》

전라남도, 시군

- 보조금이 교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하게 사용될 경우 「보조금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향후 3년간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 보조금이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업자를 지도·감독

《사업비 정산》

전라남도

- 시장·군수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토대로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 반납 조치

시·군

- 시장·군수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2개월 이내 「지방보조금법」 제17조에 따라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등을 전라남도에 제출

《사후관리》

시·군

- 법령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16조 및 조달청 「내용연수」에 따라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장비·설비	조달청, 해수부 「내용연수」에 등록되지 않은 장비 : 설치일(물품납품일)로부터 5년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매각 등),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제공에 사용 불가

- 현장점검 등을 통해 부당사례 발견 시 책임을 규명하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재 조치 및 전라남도에 보고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연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사업추진상 문제점 발굴 및 의견 청취 등을 통해 관련 제도 보완·개선 추진

IV. 그 밖의 사항

- 본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가 본 사업 근본 취지에 맞게 별도로 정하여 시행 가능
- 사업비 집행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